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3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전재수・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박광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

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생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
	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
	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
	<u>다.</u>
<u><신 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제29조(벌칙) ① (생 략)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3. <u>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u>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
<u>경우를 포함한다)를</u> 위반하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한다)을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u> <신 설></u>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
	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
	<u>한 자</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